

건설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 공고

『건설산업기본법』 제10조(건설업의 등록기준) 및 제21조2(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금지)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(등록말소)하고, 『건설산업기본법』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14년 01월 03일

속 초 시 장



1. 행정처분일 : 2014. 01. 03.

2. 행정처분 대상업체

번호	상 호 법인(주민)등록번호	대표 자	소재지	처분업종 (등록번호)	행정처분 내 역	행정처분 사 유	적용법규
1	(주)대지건영 (141311-*****)	최순철	속초시 소평로 45(조양동)	시설물유지관리업 (속초2006-29-01)	등록말소 2014.01.10.	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금지	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 및 제83조 제6호
2	태광개발(주) (165011-*****)	김진국	속초시 교동 794-2	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(충남당진2003-10-05)	등록말소 2014.01.10.	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(최근3년 이내 동일 등록기준<자본금> 미달로 영업정지)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3

3. 공고장소 : 속초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<http://www.kiscon.net>)

4. 공고내용

가. 『건설산업기본법』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<http://www.kiscon.net>)에 공고하였으며, 아울러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거나,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설과(☎033-639-275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